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1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김선교 · 김위상 · 안철수
김상훈 · 송석준 · 김성원
구자근 · 최은석 · 최보운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또는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사실상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와 교육 이수 의무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공표와 교육이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

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이 확정된”을 “처분을 한”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처분이 확정된”을 “처분을 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생략)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u>처분이</u> <u>확정된</u>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처분을 한~~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u>처분</u> 이 <u>확정된</u>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 ----- <u>처분을</u> <u>한</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